

충청북도사투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투의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「별표」권한위임사투증 보건과 소관에 “제70호 내지 제79호”
를, 공업과 소관에 “제19호”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보건과 소관 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보건과	70	· 적출물처리 소각시설설치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4조
	71	·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5조
	72	· 처리계획수립 및 처리실적서 제출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6조
	73	· 적출물처리업자의 휴업, 재개업, 폐업, 장소이전, 명의변경 등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8조
	74	· 적출물등의 처리비용 결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10조
	75	·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의 취소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11조
	76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의 지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5조
	77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비용 결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3조
	78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의 취소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4조
	79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도 감독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5조

< 공업과 소관 >

분야별 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공업과	<p>19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(청주시 제외) 가. 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관리 나. 지방공업단지 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임대가격 및 납부방법 결정 다.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및 공업단지안의 도로, 폐수처리장, 가로등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징수 라. 지방공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그 변경사항의 동의 마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설립 완료전 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처분시 매수, 양도 바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설립완료후 공장 기타시설 처분시 동의 사. 경매 등에 의한 공단용지 취득자의 신고수리 및 입주계약 아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단용지 용도별사용불이행시 공단용지의 환수 자. 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동의, 매수 차.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카. 지방공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시 	<p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조 제7호</p> <p>동법 제24조</p> <p>동법 제36조 제2항</p> <p>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</p> <p>동법 제38조</p> <p>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</p> <p>동법 제39조 제3항</p> <p>동법 제40조</p> <p>동법 제41조</p> <p>동법 제42조 및 제43조</p> <p>동법 제44조</p> <p>동법 제45조</p>

신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				
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
보건과	1 - 69	(생략)	(생략)	보건과	1 - 69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		(신설)				70	· 적출물처리 소각시설설치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4조
		(신설)				71	·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5조
		(신설)				72	· 처리계획수립 및 처리실적서 제출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6조
		(신설)				73	· 적출물처리업자의 휴업, 재개업, 폐업, 장소이전, 명의변경 등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8조
		(신설)				74	· 적출물등의 처리비용 결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제10조
		(신설)				75	·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의 취소	· 적출물등처리규칙제11조
		(신설)				76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의 지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5조
		(신설)				77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비용 결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3조
		(신설)				78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의 취소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4조
(신설)		79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도감독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5조				
공업과	1 - 18	(생략)	(생략)	공업과	1 - 18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(신설)		19	○ 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(청주시제외) 가. 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 구획관리 나. 지방공업단지 용지 및 공장 기타 시설의 임대가격 및 납부방법 결정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제2항				

업				종			
업종	업종	업종	업종	업종	업종	업종	업종
						다.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및 공장단지안의 도로 보수처리장, 가로등 기타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징수	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
						라. 지방공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그 변경사항의 동의	동법 제38조
						과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 설립 완료전 용지 및 공장 기타 시설의 처분시 매수, 양도	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
						바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 설립 완료후 공장 기타시설 처분시 동의	동법 제39조 제3항
						사. 경매 등에 의한 공단용지 취득자의 신고 수리 및 입주계약	동법 제40조
						아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단용지 용도별 사용 불이행시 공단용지의 환수	동법 제41조
						자. 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동의, 매수	동법 제42조 및 제43조
						차.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사업	동법 제44조
						카. 지방공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'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시	동법 제45조